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
------	-----

2018. 11. 23.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8. 11. 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 제안이유

-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을 고려한 실·본부국 재편 : 1실 9본부 9국 → 6실 5본부 8국(안 제4조)

(1) 경제·복지·교통·안전·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본부’를 ‘실’로 재편함.

- ▶ 경제진흥본부 → 경제정책실,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실,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실

(2)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함.

나. 기구 변동과 현안 사항을 반영한 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

(1)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의 기구 변동사항 반영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2) 복지정책실, 도시재생실의 기구 변동 반영(안 제7조, 제16조)

(3) 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분장사무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3조, 제17조)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기관 소재지 및 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의 근거규정 등을 현행화(안 제50조 및 별표3의 제목)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미래·복지·균형 등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구신설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본청은 1실 9본부 9국에서 6실 5본부 8국 체제로 변경되며, 소속기관은 현재와 같이 3사업본부 32직속기관 47사업소 체제를 유지하게 됨.

〈본청 조직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직급	1실 9본부 9국	직급	6실 5본부 8국
실	1급 (1)	기획조정실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본부	1급 (5)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2.3급 (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국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나. 기능 중심의 실·본부·국 재편(안 제4조제2항 등)

- 서울시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본부·국을 재편해 현재 1실 9본부 9국 체제에서 6실 5본부 8국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 이에 따라 6실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1급 기구로, 5본부는 다수의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2·3급 기구로, 8국은 기능별로 전담 책임과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2·3급 기구로 구분하고자 함.
- 이런 구분은 1급 기구를 ‘실’로, 기획관을 두고 있는 2·3급 기구는 ‘본부’로, 별도의 기획관이 없는 2·3급 기구를 ‘국’으로 변경하는 사실상 직급에 따른 기구 개편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구 명칭 변경은 해당 기구의 규모와 직급 수준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정부 부처를 비롯한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잦은 기구 명칭 변화에 따른 피로도와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제기됨.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핵심과제 중점 실행을 이유로 들어 당시 ‘경제진흥실’과 ‘복지건강실’, ‘도시안전실’을 각각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안전본부’로 기구 명칭을 개정한 바 있음.
-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와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기구의 명칭을 4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는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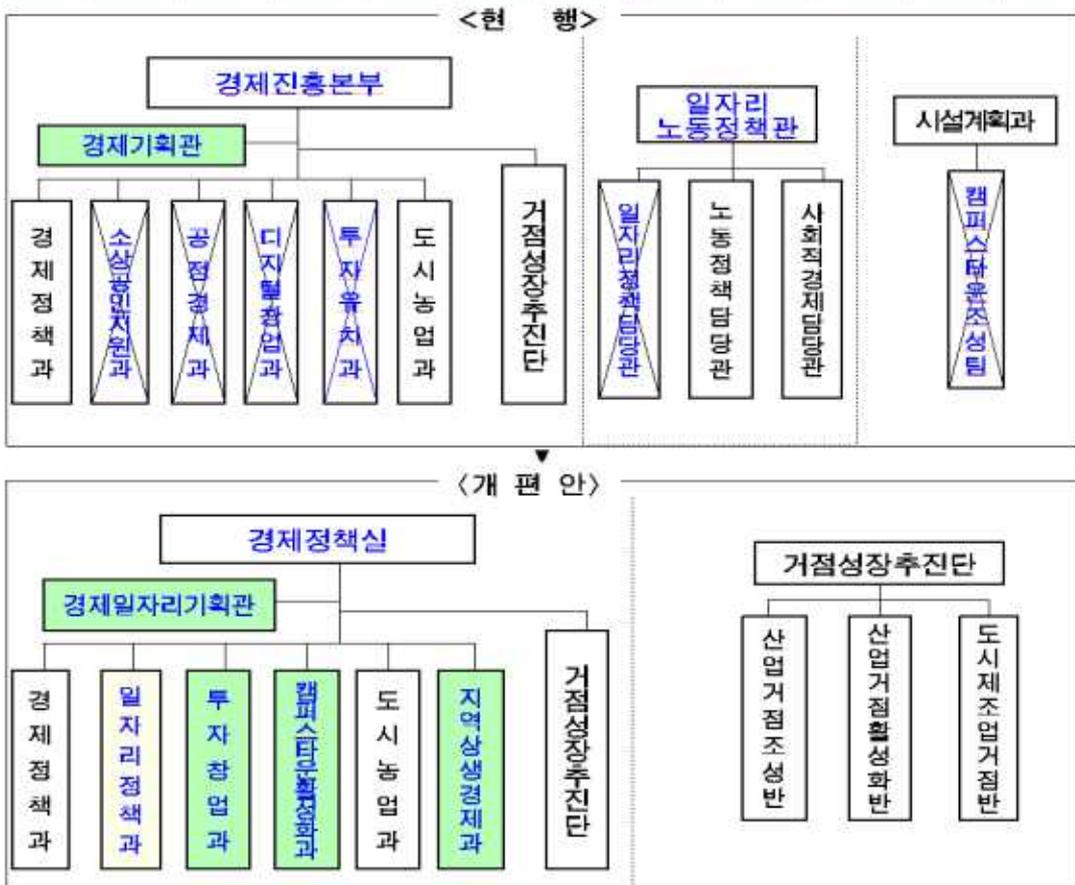
다. 분야별 주요 조직개편 사항

(1) 경제·노동·청년분야 조직개편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와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에 투자하는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주요 경제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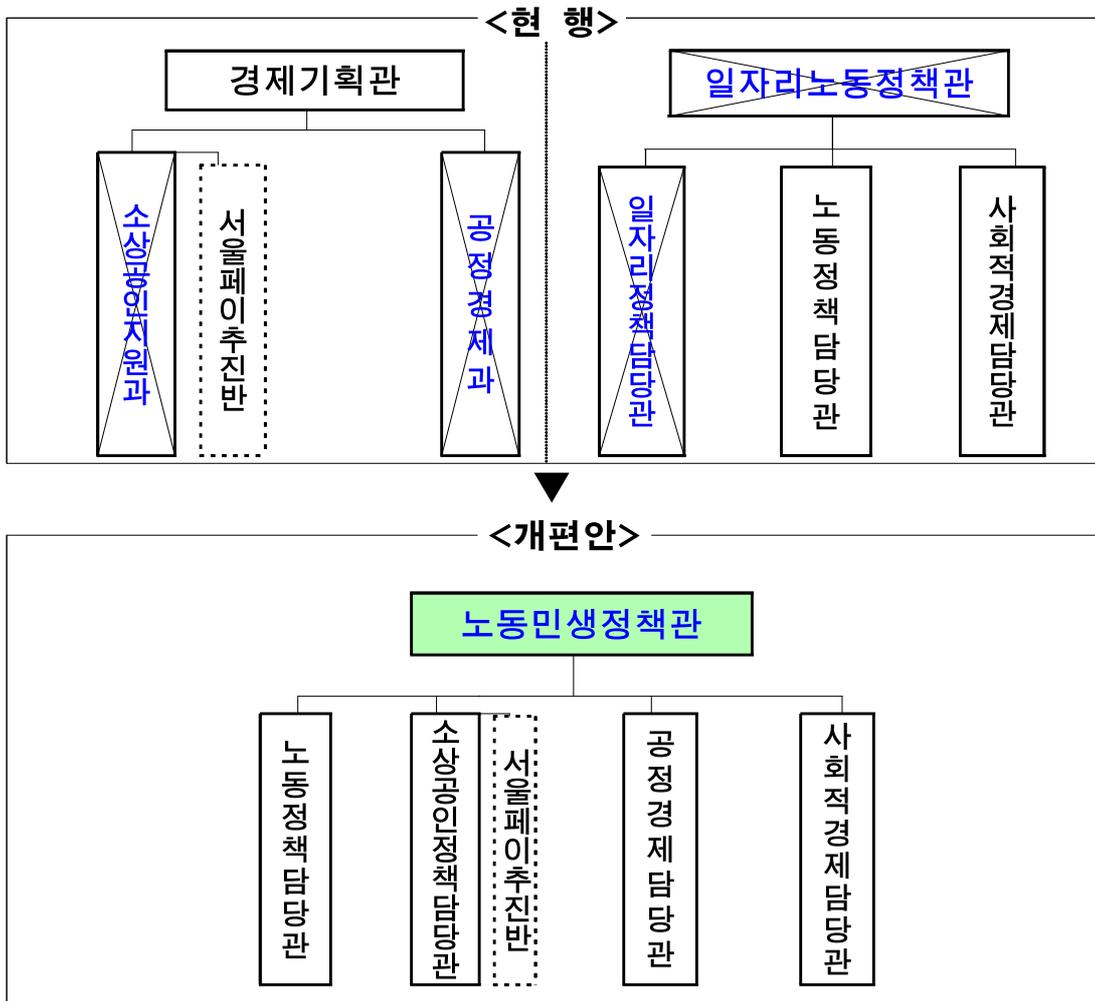
- 우선, 혁신인재 양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노동 정책관내의 ‘일자리정책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고,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경제분야 조직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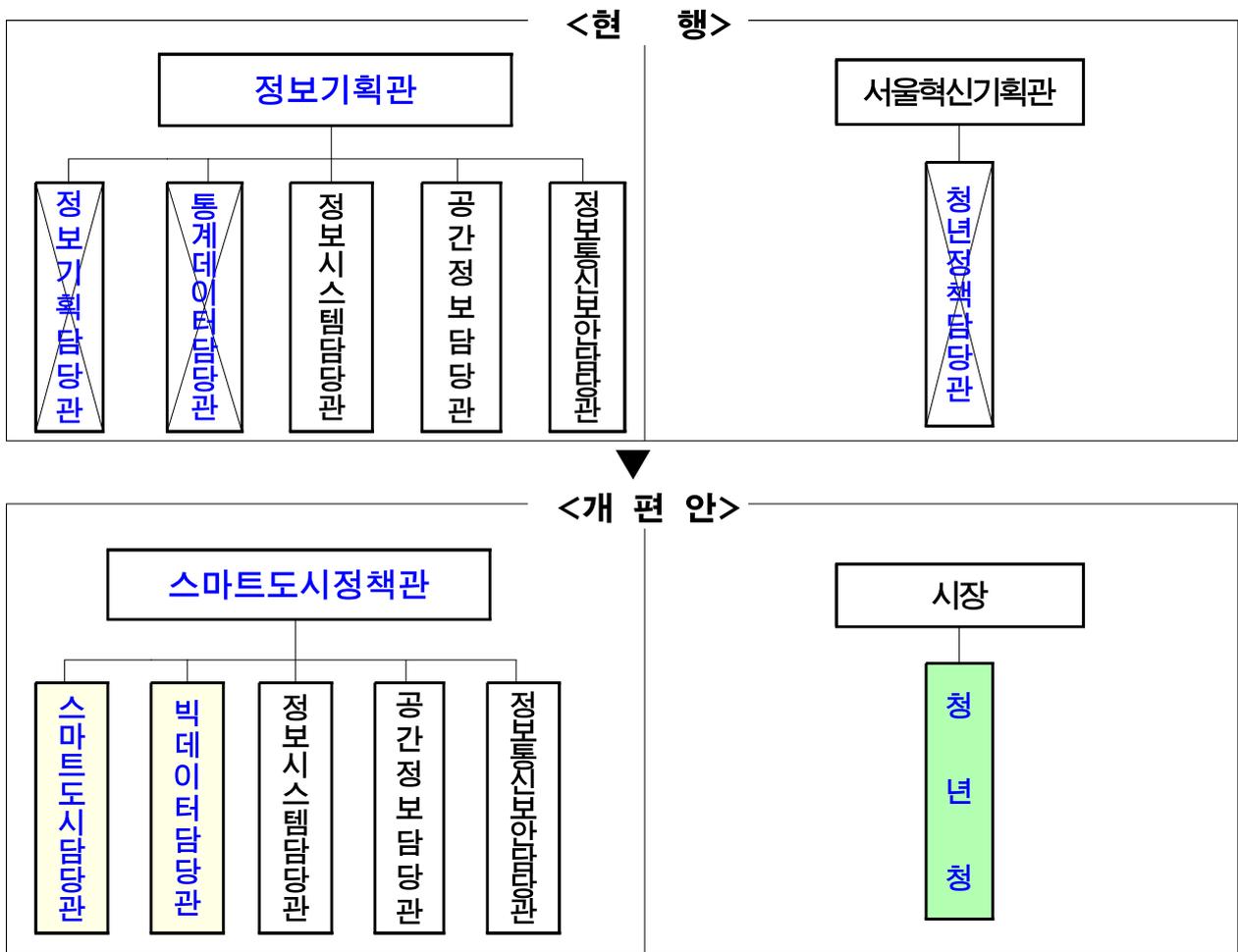
- 또한, 창업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창업과'를 '투자창업과'로 재편하고, 대학거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 간 인재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생경제과'를 신설할 예정임.
- 반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전담하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을 포함한 상생·공정·노동 등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재편할 계획임.

〈노동민생정책관 설치(안)〉



-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편하고, 청년의 현실과 미래의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자 함.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청년청 설치(안)〉



- 일자리정책 업무를 경제정책실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경제 상황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상생경제과'의 신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직면과제인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과 지역, 서울과 지방 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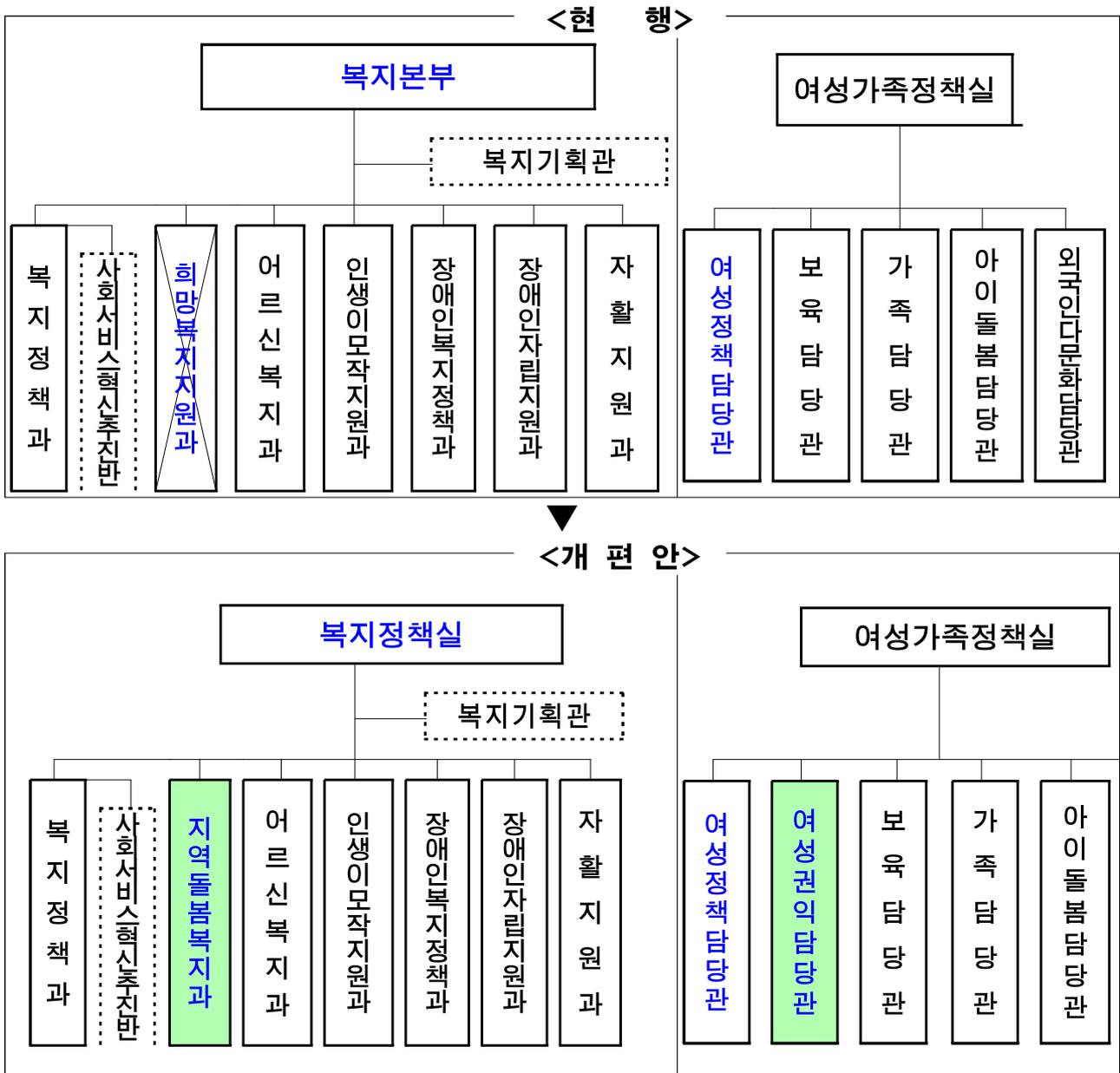
- 반면, 창업과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통합해 ‘투자창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창업에 대한 지원 축소나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 신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의 약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부서 변경은 업무내용의 실질적 변화라기 보다는 최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함.
- 특히, 시장 직속의 ‘청년청’ 신설 문제는 청년이 당면한 현실과 미래의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廳)’이라는 명칭의 사용근거가 부족하고, 4급 상당의 기구임에도 시민들이 기구의 규모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서 명칭사용의 적합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2) 복지분야 조직개편

- 서울시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한 조직설계를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희망복지지원과를 ‘지역돌봄복지과’로 확대 개편해 돌봄 SOS센터 설치 등 틈새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를 전담할 ‘여성 권익담당관’을 추가 신설할 예정임.

<복지분야 조직개편(안)>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원 인력이 절대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색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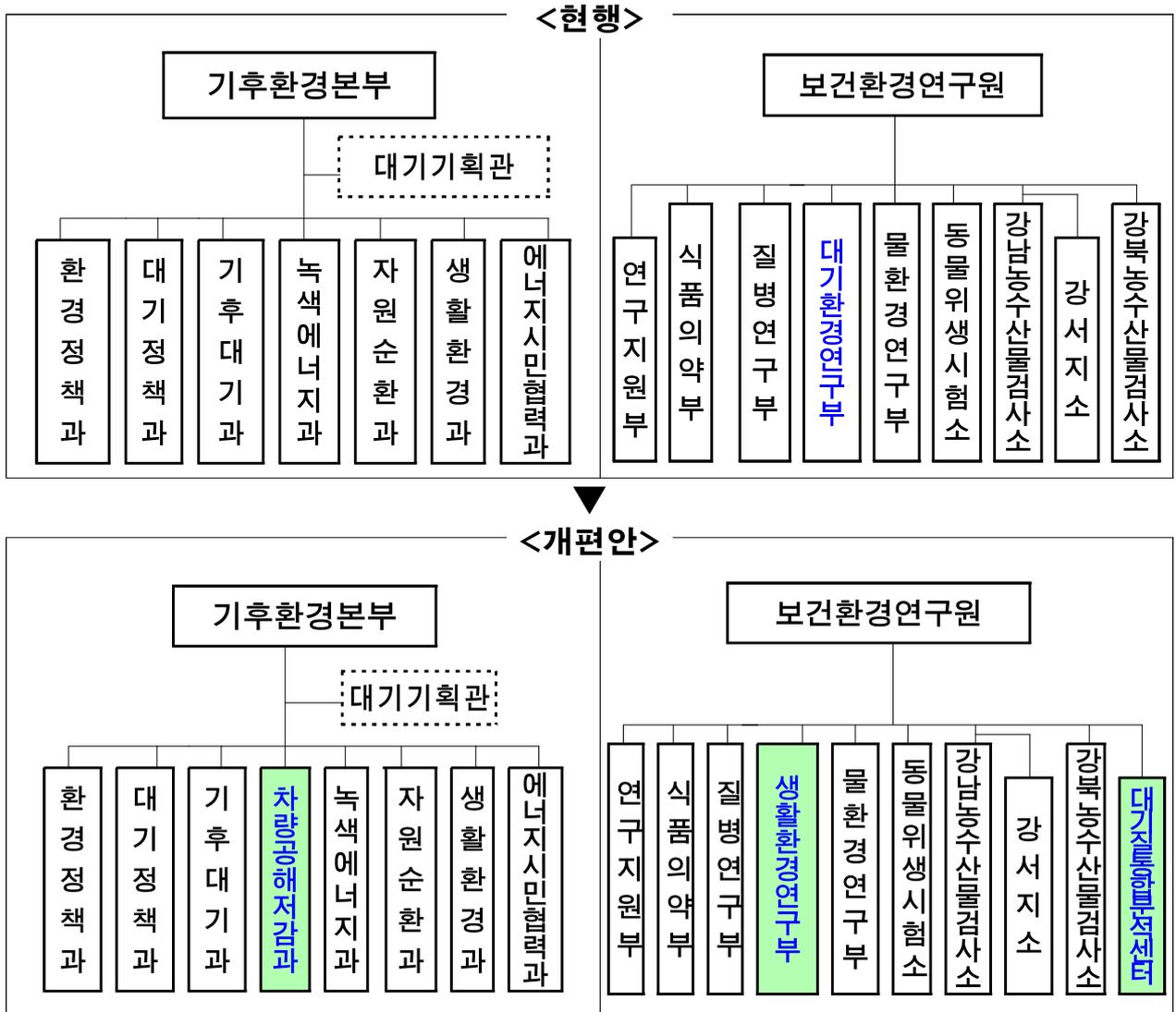
합한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인 젠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젠더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시민건강·안전분야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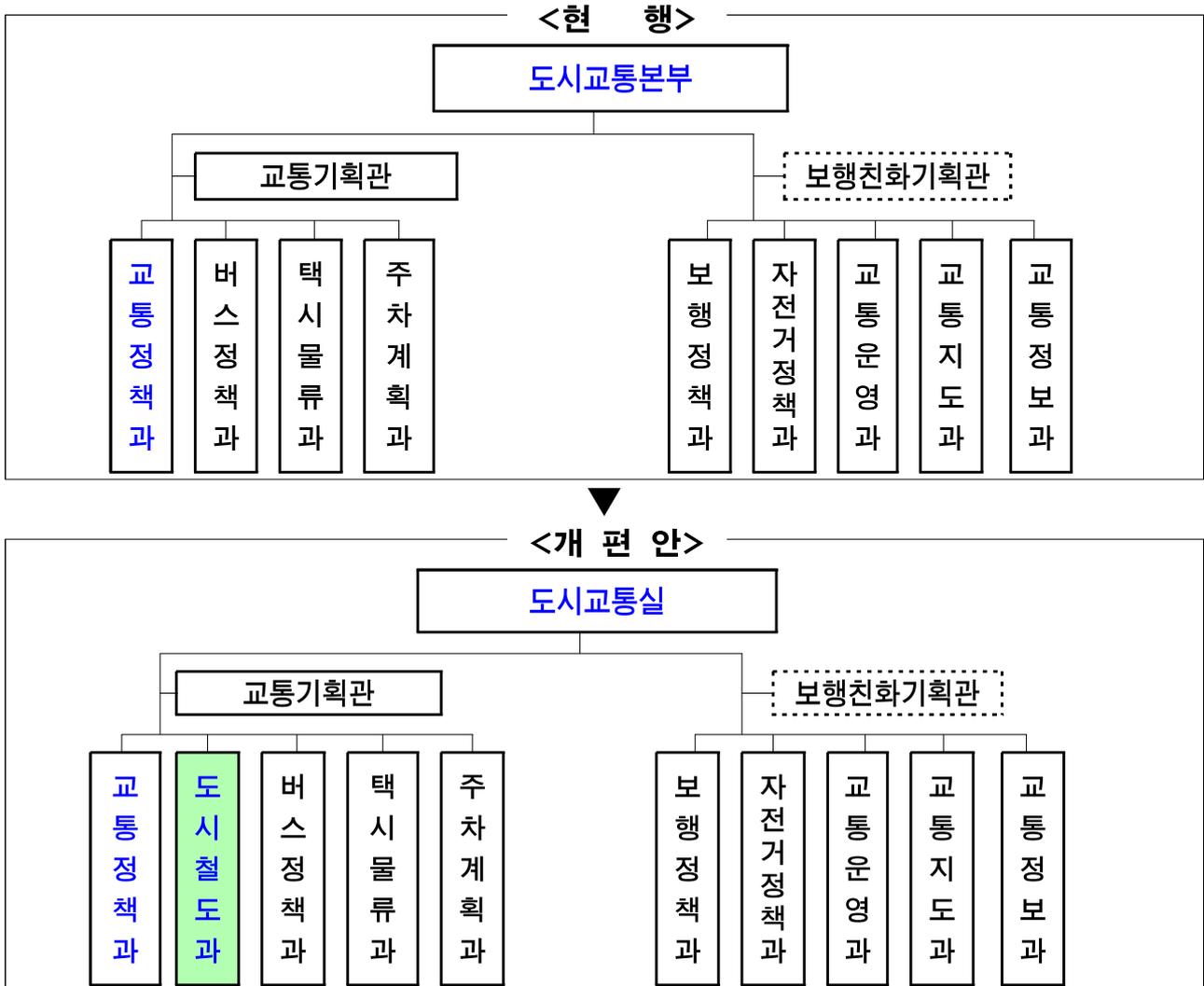
-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관리 문제가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는 대기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할 계획임.
 - 우선, 국내 대기질 오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환경본부에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대기환경연구부'를 '생활환경연구부'와 '대기질통합분석센터'로 분리·설치해 기능을 명확화 하고 있음.

〈대기질 개선관련 조직개편(안)〉



- 이 밖에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과 이용환경의 개선 등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과’를 신설하려 함.
-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노후경유차 친환경 유도 전환, 유관기관 협력 구축 등 대기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통 발생 미세먼지 저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설 예정임.

〈도시철도과 신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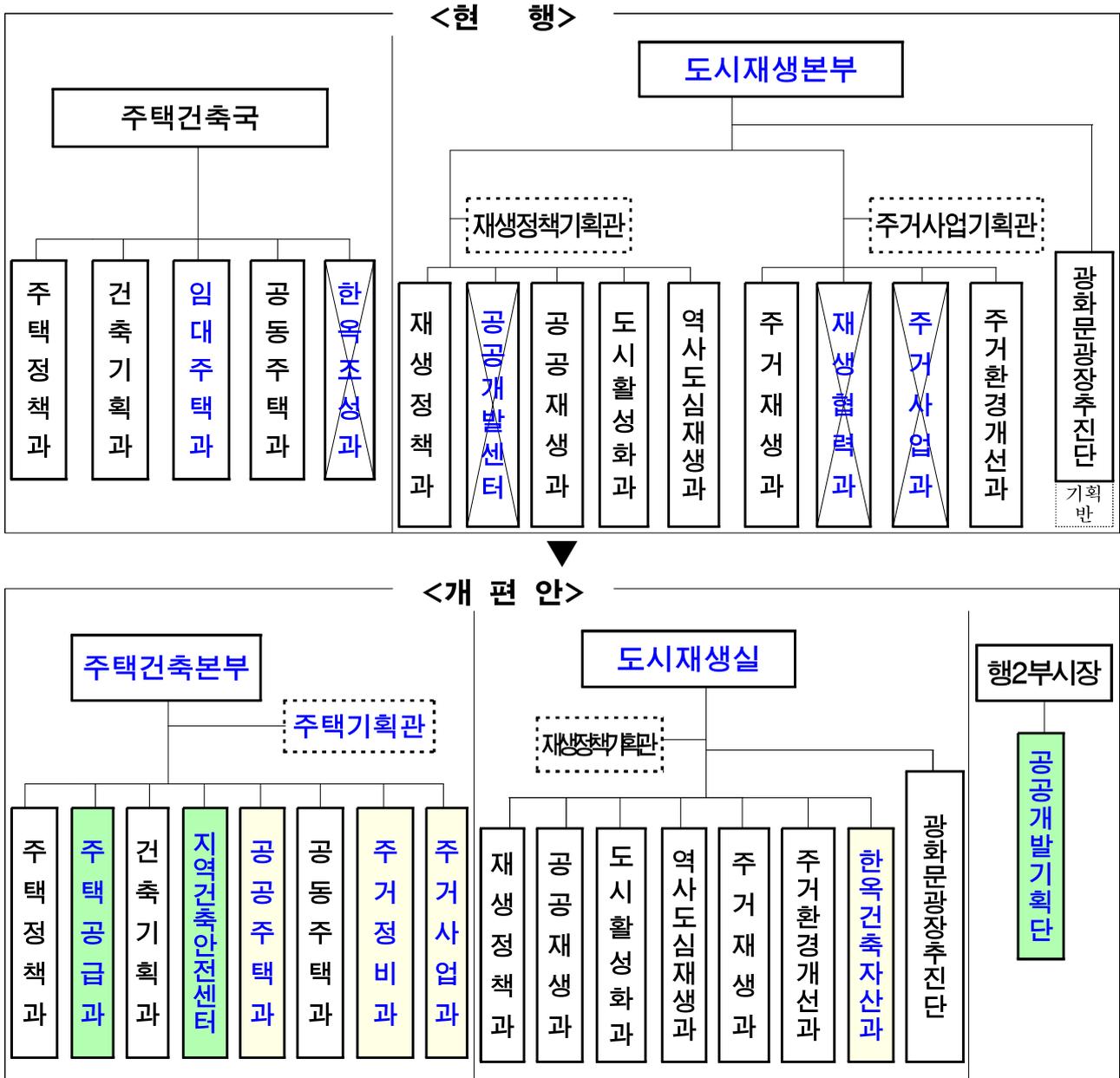


-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대기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므로, 동북아 도시가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4) 주거복지·도시안전·균형발전분야 조직개편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재정비 업무를 포함한 주거사업 관련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일원화하고,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 진흥과 활용 업무를 ‘도시재생실’에서 담당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주택건축본부’에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임대주택과를 ‘주택공급과’로 명칭 변경할 예정임.
 - ‘도시재생실’에는 기존의 도시재생 업무 외에 주택건축본부의 ‘한옥조성과’를 ‘한옥건축자산과’로 재편·이관하고, 생활밀착형 도시 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시계획국에 ‘전략계획과’를 신설할 계획임.
 - 또한, 균형적 공공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공공개발기획단’(3·4급)을 신설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공급, 주거 관리·정비·안전 업무는 ‘주택건축본부’에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건축자산 진흥 업무는 ‘도시재생실’에서, 계획적·균형적 도시발전 구상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도록 명확히 역할을 구분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업무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도시재생 분야 조직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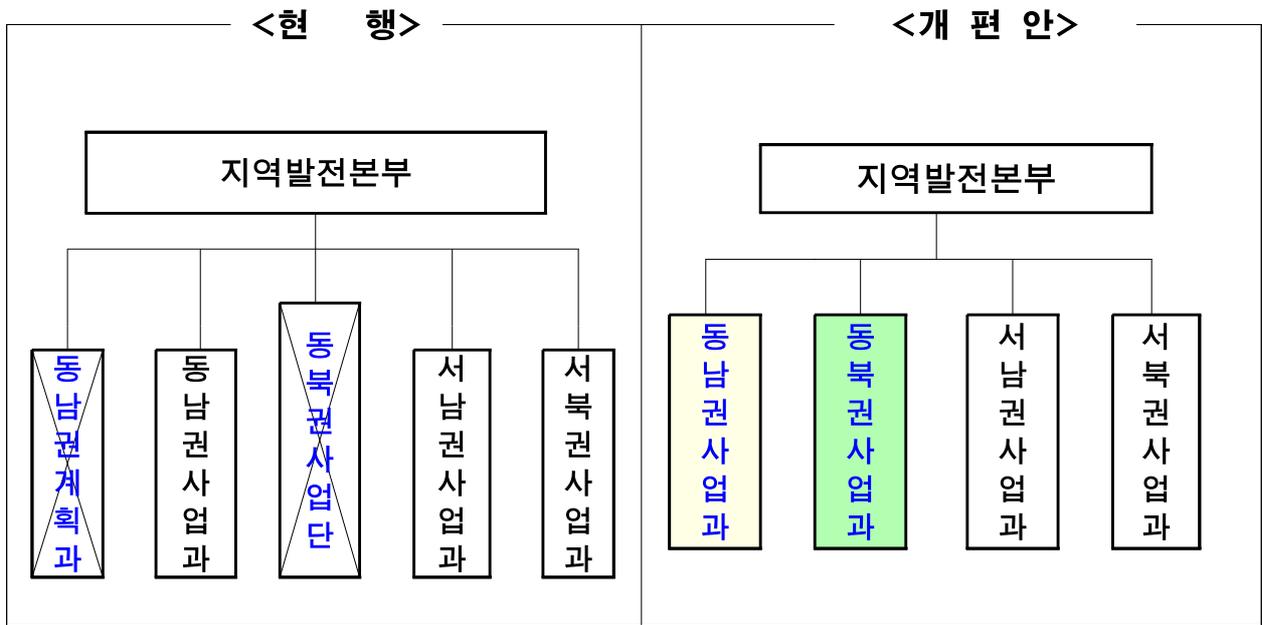


(5) 현안업무 실행력 강화와 업무통합을 통한 조직 재정비

- 서울시는 현안 업무의 실행력 강화와 업무통합을 통해 시정 주요사업 효과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직을 재정비 하고자 함.

- 우선 '지역발전본부' 조직 내 직급 체계를 재정비하고, 영동대로 일대를 시민공간으로 복합개발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4급)'을 신설할 계획임.

〈지역발전본부 조직 정비(안)〉



- 아울러,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관광사업과를 '관광산업과'로 변경해 업무통합 등에 따른 과 단위 조직 재정비에 나설 예정임.
- 또한, 온라인 시민숙의 공론의 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에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을 신설하고, 서울혁신기획관이 담당하던 인권 업무를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재정비에 나설 계획임.

- 이로 인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였던 청년청과 인권담당관이 각각 시장과 정무부시장실로 이관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조정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종합 평가

- 서울시는 민선7기 서울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와 시민체감도 제고를 이번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된 이유로 밝히고 있음.
- 하지만,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직급에 따른 실·본부·국의 정비는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 시민의 삶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며, 7개의 4급 상당 조직이 확대되는 이번 조직개편이 자칫 행정조직의 확대와 비대화로 비춰질 수 있음.
- 또한 별다른 설명 없이 4년 전 조직개편 당시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년청’이나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과 같이 기구 명칭을 통해 조직규모나 직급수준, 주요 추진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서의 신설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부서 통·폐합·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즉, 2011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는 모두 17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음.

〈서울시 연도별 기구조례 개정 연혁〉

2011년	6, 12월	(2차례)	2015년	3, 6, 11월	(3차례)
2012년	2, 8월	(2차례)	2016년	4월	(1차례)
2013년	8월	(1차례)	2017년	2, 4, 8월	(3차례)
2014년	10월	(1차례)	2018년	3, 6, 8, 10월	(4차례)

-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내부 조직원과 시민들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기구의 명칭이나 소관업무의 조정과 같은 조직개편에 집착하기 보다는 업무성과 향상과 내실 있는 조직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50개의 3급 이상 정규기구 외에도 시장 방침으로 3개의 한시기구(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와 6개의 법외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이들 법외 임시기구에 대한 정비 요구가 반복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구를 폐지하려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법의 임시기구 현황〉

연번	기구명	설치근거	업무내용
1	국제협력관	시장방침(2013. 12. 2)	·국제교류분야 총괄·조정
2	복지기획관	시장방침(2014. 7. 4)	·복지정책, 자활지원 등 총괄
3	보행친화기획관	시장방침(2010. 8.16)	·자전거, 교통운영 등 총괄
4	대기기획관	시장방침(2011. 11. 29)	·기후, 환경, 에너지관련 업무 총괄
5	재생정책기획관	시장방침(2012. 9. 28)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총괄
6	주거사업기획관	시장방침(2011. 11. 29)	·재정비, 주거환경관련 업무 총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
----------	--------

제안년월일 : 2018년 11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시행일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19년 1월 17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464 450 544 495">부칙</p> <p data-bbox="204 600 820 719">이 조례는 <u>2019년 1월 17일부터</u> 시행한다.</p>	<p data-bbox="1107 450 1187 495">부칙</p> <p data-bbox="842 600 1465 719">이 조례는 <u>2019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을 각각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로 한다.

제6조 제목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조성”을 “조성·활성화”로 하여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5호로 한다.

3. 창업정책 수립·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제목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지원·관리”를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한

다.

제8조 제목“(도시교통본부)”를“(도시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철도 계획·관리”를 “도시철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철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호 중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을 “환경계획, 환경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미세먼지에·경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를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한다.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를 “시민협력,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교육”으로 한다.

4.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목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8호) 중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을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으로 한다.

제16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 중 “생활권계획 수립·조정”을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목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중 “덕수궁길 15(서소문동)”을 “청계천로 8(무교동)”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72조”를 “제7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u>를 둔다.</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u>----- ----- -----<u>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u>----- -- <u>주택건축본부</u>----- ----- --.</p>
<p>제6조(<u>경제진흥본부</u>) <u>경제진흥본부</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산업거점 <u>조성</u>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u>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u> 및 <u>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제6조(<u>경제정책실</u>) <u>경제정책실장</u>-----</p> <p>-----.</p> <p>1. (현행과 같음)</p> <p>7. ----- <u>조성·활성화</u> ----- -----</p> <p>2. <u>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창업정책 수립·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u></p>

현 행	개 정 안
<p>4. <u>경제민주화,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5. <u>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p> <p>6. <u>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u></p> <p>7. <u>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u>사항</u></p> <p>4. <u>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6. <u>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5.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7조(복지본부) 복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에 관한 사항</u></p> <p>3. ~ 6. (생략)</p>	<p>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도시교통본부) <u>도시교통본부</u></p>	<p>제8조(도시교통실) <u>도시교통실장</u>-----</p>

현 행	개 정 안
<p>같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u>도시철도 계획·관리</u>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2. ~ 9. (생 략)</p> <p>제10조(기후환경본부) (생 략)</p> <p>1. <u>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u>에 관한 사항</p> <p>2. 대기질 개선, <u>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u>에 관한 사항</p> <p>3. 기후변화 대응, <u>친환경자동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생활대기 관리</u> 등에 관한 사항</p>	<p>-----.</p> <p>1. ----- -----<u>도시철도 계획</u>----- -----</p> <p>2. 도시철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제10조(기후환경본부) (현행과 같음)</p> <p>1. <u>환경계획, 환경협력</u>----- ----- ----- -----</p> <p>2. -----<u>미세먼지에·경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u>-----</p> <p>3. ----- ---<u>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u>----- -----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 6. (생 략)</p> <p>8. 에너지 분야 <u>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u> 등에 관한 사항</p>	<p>4. <u>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u></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u>시민협력,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에너지교육</u>-----</p>
<p>제13조(관광체육국) (생 략)</p> <p>1. (생 략)</p> <p>2. <u>관광유치 및 MICE산업 육성</u>에 관한 사항</p> <p>3. ~ 4. (생 략)</p>	<p>제13조(관광체육국)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u>에 관한 사항</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15조(<u>안전총괄본부</u>) <u>안전총괄본부</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 략)</p>	<p>제15조(<u>안전총괄실</u>) <u>안전총괄실장</u>-----</p> <p>-----.</p> <p>1.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도시재생본부) <u>도시재생본부</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u></p> <p>3. <u>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u></p> <p>4. ~ 7. (생 략)</p> <p>8. <u>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u></p> <p>9. <u>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u>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u></p> <p>11.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6조(도시재생실) <u>도시재생실장</u>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2. ~ 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6. <u>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u> ----- ----</p> <p>〈삭 제〉</p> <p>〈삭 제〉</p> <p>7. (현행 제11호와 같음)</p> <p>8. <u>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도시계획국) (생 략)</p> <p>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u>생활권계획 수립·조정</u> 등에 관한 사항</p> <p>2. <u>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u>에 관한 사항</p> <p>3. ~ 7.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7조(도시계획국) (현행과 같음)</p> <p>1. ----- -----<u>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u>-----</p> <p>2. <u>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u></p>
<p>제18조(<u>주택건축국</u>) <u>주택건축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3. (생 략)</p> <p>4. (생 략)</p>	<p>제18조(<u>주택건축본부</u>) <u>주택건축본부장</u>-----.</p> <p>1. (현행과 같음)</p> <p>2. <u>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u></p> <p>5.·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5. <u>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0조(설치) ① (생 략)</p> <p>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u>덕수궁길 15(서소문동)</u>에 둔다.</p> <p>【별표3】 <u>시립병원의 명칭 및 위치</u> 〔제72조제2항 관련〕</p>	<p>4. <u>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7. <u>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u></p> <p>제5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계천로 8(무교동)</u>-----.</p> <p>【별표3】 ----- 〔제74조-----〕</p>